

한국균학회 교육홍보위원회 규정

제1조 (설치근거 및 목적) 본 학회 회칙 제7장 제27조에 근거하여 교육홍보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일반인들의 균학 이해 도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, 그리고 각종 출판물 및 홈페이지 등 매체를 통한 대외 홍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 및 위원 선출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본회 제 7장 제 2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3조 (임무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균학 관련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2. 학회 홈페이지, 각종 SNS를 통한 학회 및 균학 관련 홍보
3. 각종 인쇄, 출판물을 통한 학회 및 균학 관련 홍보

제4조 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,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.

④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.

제6조 (보고) 위원회는 사업업무를 이사회, 평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